通常給付　記入例

통상급부・기입례

굵은 선 테두리 안에만 기입해 주십시오.

이 신청서를 쓴 날짜를 기입

第１号様式の１

高校生等奨学給付金受給申請書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 수급 신청서

神奈川県立○○学校長　殿　(가나가와현립학교인 경우)
神奈川県教育委員会　殿　(상기 이외인 경우)

※ 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円

2024年**7**月**10**日

高校生等奨学給付金の受給を申請します。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의 수급을 신청합니다.

申請者（保護者等）	ふりがな	**かながわ　いくお**	高校生等との関係	☑親権者（父）　□親権者（母） □未成年後見人　□未成年後見人である里親 □主たる生計維持者　□生徒本人 □その他（　　　）
	氏名	**神奈川　育夫**		
	住所	〒**221-0057** **横浜市神奈川区青木町○○－○○－○○**	日中連絡が取れる電話番号	**090 － ×××× － ××××**
	※1월 1일 현재, 상기와 다른 시정촌에 주소지가 있었던 경우는 우측란도 기입하십시오.		1月1日現在の住所	**神奈川** 都・道・府・(県)　**川崎** (市)・区・町・村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
申請者以外の保護者等	ふりがな	**かながわ　たかこ**	高校生等との関係	□親権者（父）　☑親権者（母） □未成年後見人　□未成年後見人である里親 □その他（　　　）
	氏名	**神奈川　高子**		
	※1월 1일 현재, 상기와 다른 시정촌에 주소지가 있었던 경우는 우측란도 기입하십시오.		1月1日現在の住所	**神奈川** 都・道・府・(県)　**川崎** (市)・区・町・村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

- ☐친권자(아버지)
- ☐친권자(어머니)
-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인인 수양부모
- ☐주된 생계유지자
- ☐학생 본인
- ☐기타 (　　　　)

보호자(친권자 등) 의 주소・성명・전화번호(낮에 통화 가능한 것)를 기입하고, 고등학생 등과의 관계를 ☐에 체크

신청자 이외의 보호자 등이 있는 경우는, 성명을 기입하고, 고등학생과의 관계를 ☐에 체크

☑**非課税世帯**⇒【１】～【５】を記入してください。

비과세 세대 【1】~【5】를 기입하십시오.

☐**生活保護受給世帯**⇒【１】～【５】を記入してください。

생활보호 수급 세대 【1】~【5】를 기입하십시오.

해당하는 곳에 체크

【1】対象となる高校生等について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등에 대하여】

ふりがな	**かながわ　きょうすけ**	生年月日	昭和・(平成)	**20** 年 **5** 月 **5** 日
氏名	**神奈川　京介**			

在学する学校	学校の名称	(国公立)　**神奈川県**　立　**○○高等**　学校	**1** 年
	課程	☑全日制　□定時制　□通信制　□専攻科	
	在学期間	**令和6**年 **4**月 **1**日 ～ 年 月 日	

학생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입

2024년 7월 1일에 재학하고 있는(있던) 학교에 대해 기입

過去の高等学校等における在学期間	学校名　　立	平成　年　月　日 ～ 平成　年　月　日	学校の種類・課程	在学中に給付金を受給した回数 なし □　1回 □　2回 □　3回 □　4回 □　不明 □
	学校名　　立	平成　年　月　日 ～ 平成　年　月　日	学校の種類・課程	在学中に給付金を受給した回数 なし □　1回 □　2回 □　3回 □　4回 □　不明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상기 이외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던 경우에 기입

【２】扶養親族の状況及び扶養誓約について

【부양 친족의 상황 및 부양 서약에 대하여】

※신청자가 주된 생계유지자인 경우 또는 비과세 세대 중에서【1】의 학생 이외의 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입해 주십시오.
＜서약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에 체크해 주십시오.(☑는 필수입니다.)
☐ 이하의 사람은,「부양자」란의 사람과 건강보험법 등에 있어서 부양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와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 ☐신청자
- ☐신청자 이외의 보호자 등
- ☐기타 (　　)

扶養親族の状況

【1】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학교명・학년 등	과정	급부금 신청 유무	부양자<기입 필수> (부양자를 ✔하십시오.)
본인	【1】과 같음					☑申請者 □申請者以外の保護者等 □その他（　）
【고등학생 등】"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등" 이외의 고등학생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기입하십시오. ☐형(오빠) ☐남동생 ☐누나(언니) ☐여동생				☐통신제 ☐전공과 ☐상기 이외	☐있음 ☐없음	
□兄　□弟 ☑姉　□妹	**神奈川　英子**	**H18.12.12**	国・(公)・私 立　**神奈川県立○○**高等学校 **3** 年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	☑有 □無	☑申請者 □申請者以外の保護者等 □その他（　）
□兄　□弟 □姉　□妹			国・公・私 立　高校　年	□通信制 □専攻科 □上記以外	□有 □無	☑申請者 □申請者以外の保護者等 □その他（　）
☑兄　□弟 □姉　□妹	**神奈川　学**	**H14.8.8**	**無職**			☑申請者 □申請者以外の保護者等 □その他（　）
☑兄　□弟 □姉　□妹	**神奈川　教夫**	**H15.9.9**	**□□□□大学3年**			☑申請者 □申請者以外の保護者等 □その他（　）

<신청자가 주된 생계유지자인 경우 또는 비과세 세대로 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
서약란에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또한, 부양하고 있는 15세 이상 23세 미만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기입해 주시고, 본인 및 형제자매의 부양자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십시오.

【3】振込先口座

【입금 계좌】

金融機関名	**●●**	(銀行)・信用金庫・信用組合・農協	**▲▲**	本店・(支店)・本所・支所・出張所	支店コード **0 0 1**	預金種目 (普通)・貯蓄
金融機関コード	**1 2 3 4**				
口座番号	**1 2 3 4 5 6 7**	口座名義人（申請者）	※カタカナで記入してください　**カナガワ　イクオ**		

신청자 명의의 입금 계좌를 기입

【4】保護者等の収入の状況について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대하여】

（1）생활보호 수급 증명서(생업부조(고등학교 등 취학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①	□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생업부조(고등학교 등 취학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명서)

> 생활보호(생업부조) 수급 세대인 경우는 체크

（2）다음 보호자 등의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 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했습니다.)
☑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했습니다.)

①	☑	**친권자(부모) 2명분 (단신 부임의 경우라도 친권자 2명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학생이 미성년(18세 미만)이고 친권자(부모)가 두 명 존재하는 경우
②	□	**친권자 1명분 (친권자가 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아동상담소장,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인 경우는 그 사람은 제외한다.)** ・이혼,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 명인 경우 ・친권자는 2명이지만 가정 폭력이나 양육 포기, 실종 등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친권자 한 명의 과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
③	□	**미성년 후견인（　）명 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이 복수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전원 분)）
④	□	**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하 '주된 생계유지자'라고 한다) (양친 등) 2 명** 학생이 재학 중에 성인한 경우로서 성인하기 직전인 미성년 시점부터 신청 시점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변경이 없는 경우
⑤	□	**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주된 생계 유지자) 1명** ・학생이 미성년이지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학 시점에 학생이 성인이었지만, 주된 생계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가 1명이었던 경우 ・학생이 성인이며 미성년 시점에서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등
⑥	□	**학생 본인**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학생 본인이 성인인 경우 등

<확인 사항> 다음 사항에 동의하시는 경우 □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등취학지원금 신청(신고)으로 입력한 보호자 등의 개인번호나 제출한 개인번호카드 사본 등을 사용하여 수입 상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다음의 이유로 （1） 또는 （2）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①	□	소득 확인 대상이 학생 본인(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중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미성년이며 "도부현민세 소득할"・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될 정도의 수입이 없으므로

> 비과세 세대인 경우는 (2)의 ①에서 ⑥까지,
> 또는 (3)① 중 어느 하나에 체크
>
> 또한, 개인번호에 의한 수입 상황의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확인 사항>의 □에도 함께 체크

【5】誓約・委任欄 ※ 신청자의 성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위임)합니다.　　**신청자 성명**　神奈川　育夫

<비과세 세대, 생활보호 수급 세대 공통>

○ 이 신청서의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또한 이 신청서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는 가나가와현교육위원회의 청구에 따라 그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 **가나가와현 이외의 도도부현에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등은, 7월 1일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입소시설조치비(견학여행비 또는 특별육성비(모자생활 지원시설의 고등학생 등은 제외))의 지변 대상이 아닙니다.

○ 수업료 이외에 학교에 납부하는 **납부금 등에 미납분이 있을 때는**, 제가 지급 받는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을 그 미납분에 충당하는 것에 대해 학교장에게 위임합니다.**

<비과세 세대만>

○ 【1】에서 기입한 신청 대상인 고등학생 등 본인은, 7월 1일 현재, 생활보호법(1950년 법률 제144호) 제36조 규정에 의한 생업부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인 고등학생 등이 전공과에 재학하는 경우는 제외)

>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자가 서명하십시오.
>
> 서명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学校使用欄＞

＜学校受付印＞

次のことについて確認しました。

> **학교에서 사용하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

学校の名称　　**学校長の氏名**　職印